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839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3. 제출일자 : 2025년 5월 26일
4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
II. 제안이유

가. 취약 소상공인 “보호” 중심의 정책과 더불어 성장 가능성과 혁신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·체계적 “성장” 정책 병행 필요.

나. 이에 서울시는 혁신·성장 소상공인 육성의 마중물이 될 “소상공인 더성장 펀드” 를 조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(투자계정) 출자 전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III. 주요내용

1. 출자근거

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제1호
- 「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 제4항
-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2. 출자방향

- 공익성(중소기업 성장 유도)과 수익성(적정 수익률)의 조화
-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·효율적인 운용
- 혁신·성장 소상공인 발굴-투자-육성 지원으로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

3. 출자대상 : 벤처투자조합, 모태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4. 출자재원 :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

5. 출자의 필요성

- 기존 취약 소상공인 “보호” 중심의 정책과 더불어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“성장·육성” 정책 병행 필요
- 경쟁력이 낮은 소상공인의 과밀구조로 인해 단기간 내 반복적인 창업과 폐업으로 소상공인의 소득수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곤란
 - ▶ 높은 자영업자 비중('22) : 23.5% (OECD 회원국 중 7위)
 - ▶ 낮은 생존율('24) : 창업후 1년 64.9%, 3년 46.9%, 5년 34.7%
- 이에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기존의 취약 소상공인 보호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,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성장 육성 정책 추진
- 소규모 투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효과
- 기술·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존 펀드는 기업당 높은 투자비용과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되나, 소상공인분야는 이미 영업을 하고 있거나 경영경험이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적고 그 투자효과도 단기에 나타나 리스크가

적음)¹⁾

- 특히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“로컬브랜드 상권 조성사업” 과 연계 추진하여 혁신·성장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할 예정임

IV. 투자조합 출자 계획

1. 추진방향

-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도약이 어려운 소상공인 발굴 투자
- 공공자금의 선제적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금융 투자 유도

2. '25년 펀드 출자 계획(안)

- 펀드명 :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
- 결성목표 : 50억원 (시 30억원, 민간 20억원)
- 자금구성 : 시 출자금 + 운용사(GP) + 기타 자금 등
- 운용기간 : 총 8년(투자기간 4년, 회수기간 4년)
- 투자대상 :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

1) 정은애(2022), 「기업가형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연구」, 중소벤처기업연구원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V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동의안의 개요

- 동 동의안은 혁신·성장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을 ‘소상공인 더성장 펀드’에 출자하기에 앞서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²⁾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2.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개요

-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융자지원을 통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65년에 설치되었으며, 2018년부터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·운용하고, 2023년에는 사회투자기금을 승계하여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함.

<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정 분류 >

계 정	용 도 ³⁾	소 관 부 서
융 자 계 정	·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융자 ·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· 기금 차입금·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·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·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	민 생 노 동 국 소 상 공 인 정 책 과
투 자 계 정	· 창업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	경 제 실 창 업 정 책 과
사회적경제계 정	·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· 사회,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	민 생 노 동 국 공 정 경 제 과

2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3)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(기금의 용도)

- 이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(이하 “투자계정”)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면서 펀드 운용자금과 투자 회수금의 재투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조성됨.
- 다만 현재 투자계정을 통해 조성된 펀드는 바이오, 인공지능 등 벤처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영업 위주의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투자 혜택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.
- 이에 동 동의안은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출자액 30억원을 포함한 결성 목표액 50억원 규모의 ‘소상공인 더성장 펀드’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.

<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·운용 개요 >

- | |
|--|
| ▶ 펀드명 :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|
| ▶ 결성목표 : 50억원 (시 30억원, 민간 20억원) |
| ▶ 출자대상 : 벤처투자조합 |
| ▶ 자금구성 : 시 출자금 + 운용사(GP) + 기타 자금 등 |
| ▶ 운용기간 : 총 8년(투자기간 4년, 회수기간 4년) |
| - 연도별 투자계획 : 25년(7억) / 26년(7억) / 27년(8억) / 28년(8억) |
| ▶ 기준수익률 : 3% 이상(모태펀드 소상공인 라이콘 분야와 동일) |
| ▶ 투자대상 :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|

- ‘소상공인 더성장 펀드’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운용되며, 연 3%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2025년에 7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투자하고 이후 4년간 회수하는 구조로 설계됨.
- 그리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특성과 성장 경로에 부합하는 ‘투자 → 성장 → 회수 → 재투자’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임.

- 참고로 정부(중소벤처기업부)에서도 2024년부터 총 250억원 규모의 ‘라이콘(LICORN)⁴⁾ 펀드’를 처음으로 조성하여 생활문화 기반의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한 발굴과 투자를 수행하고 있음.

3. 출자의 적정성 검토

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⁵⁾와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제4항⁶⁾은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, 모태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그리고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, 투자계정을 통해 ‘소상공인 더성장 펀드’에 출자하는 등 동의안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.
- 동 펀드는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자생력을 키우고, 지역상권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출자의 필요성은 인정됨.
- 특히 서울시가 결성목표액 50억원 중 3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과반의 비중과 의결권을 확보함으로써 출자 이후 펀드의 실제 운용과정에서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4) Lifestyle & Local Innovation uniCORN

5)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6)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- 다만 전문성이 부족한 서울시가 투자조합 결성을 주도할 경우 초기 운용사 선정부터 투자 전반에 걸쳐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, 투자기간 중 관리 인력의 잦은 변동으로 펀드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음.
- 현재 경남도와 부산시는 정부의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, 이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과 대비됨.
- 또한 투자계정을 경제실이 총괄하는 상황에서 동 펀드를 민생노동국이 별도 조성·운영할 경우, 부서 간 업무 중복과 책임 소재 불명확 등 행정 비효율이 예상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
입법조사관	연락처
김혜진	02-2180-8057